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894
----------	-----

제안년월일 : 2012년6월2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서울시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가 2012년 5월 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조항들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2,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57조,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b>(등록)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삭 제>
<p><b>제3조</b>(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p> <p>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삭 제>
<p><b>제3조의2</b>(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① 의장은 각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p>	<삭 제>
<p><b>제4조</b>(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p> <p>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p>	<삭 제>
<p><b>제5조</b>(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p>	<삭 제>
<p><b>제6조</b>(의장·부의장의 선거방법)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p>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p>	
<p><b>제7조</b>(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p> <p>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새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p>	<p>&lt;삭 제&gt;</p>
<p><b>제8조</b>(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p>	<p>&lt;삭 제&gt;</p>
<p><b>제9조</b>(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lt;삭 제&gt;</p>
<p><b>제10조</b>(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p> <p>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p>	<p>&lt;삭 제&gt;</p>
<p><b>제10조의2</b>(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p>	<p>&lt;삭 제&gt;</p>
<p><b>제57조</b>(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b>제70조</b>(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70조의2</b>(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p> <p>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삭제&lt;2003.3.10&gt;</p> <p>⑥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b>제71조</b>(시장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p> <p>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p>	
<p><b>제72조</b>(시장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삭 제>
<p><b>제73조</b>(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삭 제>
<p><b>제74조</b>(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p>	<삭 제>
<p><b>제75조</b>(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삭 제>
<p><b>제76조</b>(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위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위</p>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원회에 회부한다.</p> <p>② 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p>	
<p><b>제77조</b>(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p> <p>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b>제78조</b>(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p> <p>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b>제79조</b>(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p> <p>2.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p> <p>3.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p> <p>4.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p> <p>5.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p> <p>6.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p> <p>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계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p> <p>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p> <p><b>제80조</b>(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p> <p><b>제81조</b>(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p> <p><b>제82조</b>(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b>제83조</b>(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